

■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[별표 3] <개정 2023. 3. 20.>

공매대행 수수료율 및 최저수수료 기준(제78조제2항 관련)

| 구분            | 공매진행 단계       | 수수료율 | 최저<br>수수료 |
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|-----------|
| 완납<br>수수료     | 공매공고 전        | 0.6% | 12만원      |
|               | 공매공고 후 매각결정 전 | 0.9% | 18만원      |
|               | 매각결정 후 대금납부 전 | 1.2% | 24만원      |
| 해제<br>수수료     | 공매공고 전        | 0.6% | 12만원      |
|               | 공매공고 후 매각결정 전 | 0.9% | 18만원      |
|               | 매각결정 후 대금납부 전 | 1.2% | 24만원      |
| 매각<br>수수료     | -             | 3.6% | 36만원      |
| 매각결정<br>취소수수료 | -             | 2.4% | 36만원      |

비고

1. 위 표에서 "공매공고"란 법 제72조에 따른 공매공고를 말한다.
2. 위 표에서 "매각결정"이란 법 제84조제1항에 따른 매각결정을 말한다.
3. 위 표에서 "대금납부"란 법 제91조제1항에 따른 매수인의 매수대금 납부를 말한다.